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 9. 3 선고 2020나10148 판결 [차량지입보증금 등 청구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 9. 3 선고 2020나10148 판결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. 12. 13 선고 2019가합1034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, 담당변호사 김주열

피고, 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, 담당변호사 정찬우, 황자현

변론 종결2020. 7. 9.

판결 선고2020. 9. 3.

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. 12. 13. 선고 2019가합1034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 39,754,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3. 15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2019. 9. 15.부터 피고가 별지 '차량의 표시' 기재 화물차량에 'C' 번호판을 부착·봉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날까지 월 5,4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-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"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" 다음에 "(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포함)"을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"효력이 없다" 다음에 "(피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을 제12호증을 추가 제출하였으나, 을 제12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시정의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)"를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다음에 "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은 피고의 직원들이 이를 떼어내기 전에 이미 봉인이 훼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,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

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것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, 을 제6,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봉인이 이미 훼손되어 그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"를 추가한다(한편 피고는 당심에서,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 또한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9. 3. 21. 또는 2019. 12. 27. 무렵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, 원고가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운송비, 유류대금,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용은 모두 위 2019. 3. 21.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운송주선계약의 해지는 원고의 청구와 무관하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남양우

판사조미화

판사김윤석

별지